

간편안내서 애니비즈도급업배상종합보험

승인번호 : 기업영업지원팀[B=3087=13=012](‘13.1.29)

▶ 애니비즈도급업배상종합보험이란?

애니비즈도급업배상책임보험은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 꼭 필요한 「도급업자 배상책임」 담보와 「국내근재」 담보를 통합한 종합보험입니다.

▶ 상품의 특징

1. 하나의 증권으로 도급업배상책임과 사용자배상책임(근재)을 담보받을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2. 담보통합으로 인한 통합할인율(5.5%) 적용으로 보험료가 경제적입니다. (개별 상품 가입 대비 경제적)

문의: 삼성화재기업컨설팅사업부 CRC 노세용

메일: nsy2020@samsungfire.com

▶ 주요 보상하는 손해

전화: 016-788-7776

구분	담보범위
도급업자배상책임 포함	피보험자(발주자, 도급업자 등)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작업의 수행 또는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생긴 우연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장애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사용자배상책임 포함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위의 손해금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제계약 포함)에 의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상

▶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분	내용
도급업자배상책임 포함	· 고의사고/전쟁, 폭동, 소요/천재지변/방사능에 의한 손해 · 피보험자의 수급인이 수행하는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계약시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 납입시 보상) · 피보험자의 수급인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하도급 작업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재물의 권리자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 피보험자와 타인 간의 약정에 의해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기타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사용자배상책임 포함	· 고의사고/전쟁, 폭동, 소요/천재지변/방사능에 의한 손해 · 피보험자의 원수급인, 하도급인 및 그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 (계약시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 납입시 보상) ·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 · 근로자의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중에 생긴 손해 ·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경과 후 받은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손해 · 기타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본 안내서의 상품내용은 약관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약관을 참고해 주십시오.

■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특별약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하여 읽어보시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편안내서 애니비즈도급업배상종합보험

승인번호 : 기업영업지원팀[B-3087-13-012]('13.1.29)

▶ 특약가입을 통한 추가 보상

1. **도급업자배상책임 조항** : 일부공사, 교차책임, 주위재산 등
2. **사용자배상책임 조항** : 산업재해보상보험초과, 피해자과실 등

| 가입안내 |

▶ 계약시 필요사항

1. 연간 계약시 : 손익계산서, 사업자등록증
2. 구간 계약시 : 공사내역서, 사업자등록증(원청자/하청자)

▶ 가입 대상

소규모 주택, 상가 등의 건축, 건설공사에서부터 대규모 아파트, 빌딩, 공장, 댐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건축, 건설공사 발주처

■ 본 안내서의 상품내용은 약관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약관을 참고해 주십시오.
■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특별약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하여
읽어보시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편안내서 애니비즈도급업배상종합보험

승인번호 : 기업영업지원팀[B-3087-13-012]('13.1.29)

【알아두실 사항】

▶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체결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자필 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을 맺은 후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험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 체결시 약관과 청약서 부분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①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②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 ③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삼성화재해상보험) → 전화 : 1588-5114 인터넷 : www.samsungfire.com

▶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 : 1588-5114 / 인터넷 : www.samsungfire.com>고객센터>전자민원창구)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의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32, 인터넷 : www.fss.or.kr)

▶ 해지환급금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은 지급되지 아니하며,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단기요율로 계산한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여 드립니다.(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화재보험 담보시 유의사항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액과 같게 정해야 하며 만약 보험가액보다 낮게 정하면 납입보험료 부담은 줄어들지만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줄어든 비율만큼 적게 보상받고 또 보험가액보다 높게 정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실제로 입은 손해액 만큼 보상을 받게 됩니다.

▶ 화재보험 가입금액 감액 및 보험료 환급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가입금액의 조정을 통해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료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 본 자료는 2013년 1월 기준임

- 본 안내서의 상품내용은 약관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약관을 참고해 주십시오.
-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특별약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하여 읽어보시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